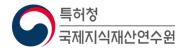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지.식.재.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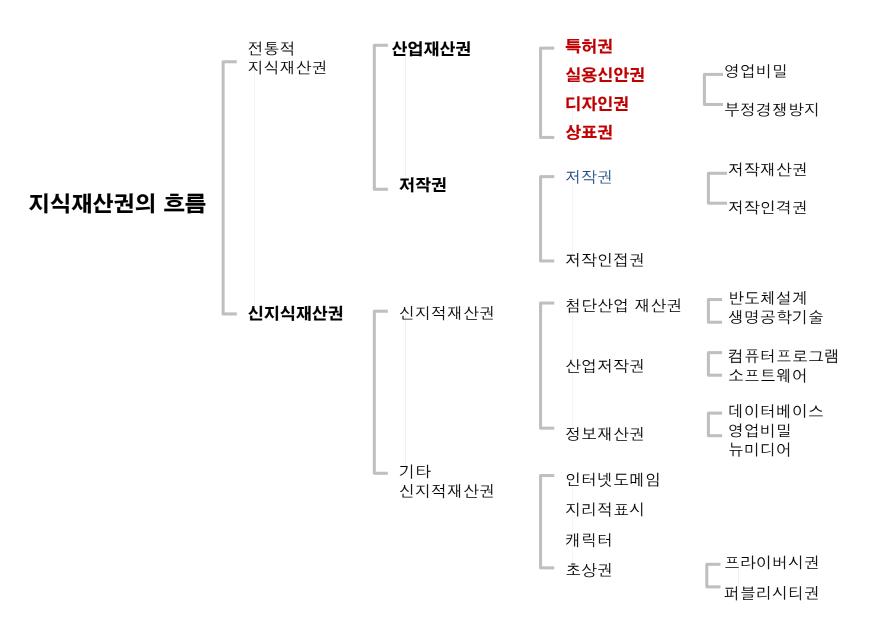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1.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헌법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u>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u>한다.



원천, 핵심기술

ABS브레이크 시스템 기술 변속기에 관한 기술 저연비 엔진기술



상표

Life-cycle이 짧은 개량기술

백미러 관련기술 컵홀더 관련기술 의자 높낮이 조절구조

물품의 외관

자체형상 전방램프형상 바퀴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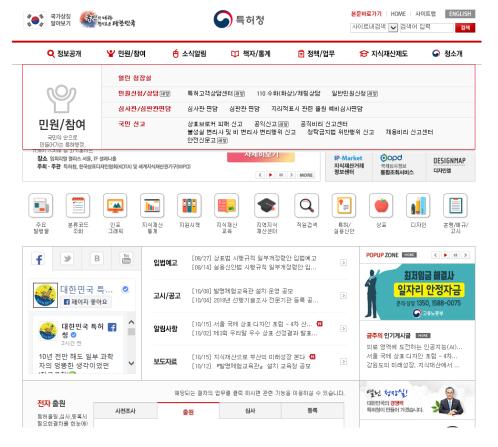
특허

상품의 명칭, 브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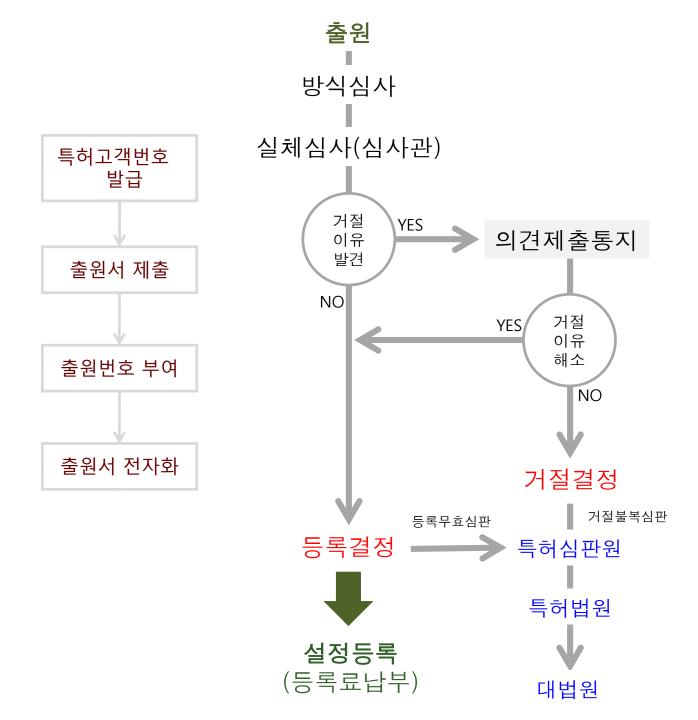
자동차명칭(소나타, SM5, 모닝) 제작사명칭(현대, 기아, 대우 등)

산업재산권은 <u>특허청(特許廳)에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되고</u> 등록에는 <u>선출원주의(先出願主義)가 적용</u>된다.

그리고 등록을 한 나라에 한하여 보호되므로 각국에 따로 출원 하여 권리화하여야 한다(속지주의).



특허청 홈페이지 : http://www.kipo.go.kr



선출원주의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귄리를 부여

선발명주의

출원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

속지주의

어떠한 사건에 대한 관할권의 행사 주체가 사건이 발생한 장소, 즉 소 재국에서 주어진다는 이론이다.



中, 국내 상표도용 올해만 2,000건

이화수 육개장, 호식이 두마리치킨 원조할머니보쌈, 연타발, 하림, 원당감자탕, 쿠우쿠우, 해우리…



독점적 지위 권리 보호



정책·세제 지원 담보 대출



정보의 가치





초보자 검색 바로가기

단계별, 번호, 인명, 문장 검색



권리별 도움말



사이트 이용안내



검색 가이드



검색팁 & 노하우



[행사/이벤트] KIPRIS 검색퀴즈 이벤트(6월) 결과발표

[KIPRIS 검색퀴즈 이벤트(6월) 당첨자 발표]KIPRIS 검색퀴즈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설문/이벤트] 6월 퀴즈이벤트 슬기로운 키프리스 생활
- [설문/이벤트] 2020년 상반기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 [시스템 개선] 인쇄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
- [설문/이벤트] KIPRIS 검색퀴즈 이벤트 결과 발표





국내특허 검색사이트

해외특허 검색사이트

각국 특허청 사이트

유관기관 사이트

^

특허청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저작권정책



● 감면 대상자 및 수수료

감면대상자	감면율	감면대상수수료
-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5 · 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학생, 장애인, 만6세 이상 만19세미만, 군사병, 공익근무요원, 전환복무수행자 * 연 10건 초과시 개인 감면	면제 (100%)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감면 * 1출원에 특허·실용신안 심사청구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청구항을 30개 이하로 지정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인 자 - 만 65세 이상인 자 * 연 20건 초과시 출원료 30% 감면	85%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감면
- 개인, 소기업, 중기업 * 개인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이 각각 연간 20건을 초과하는 경우, 출원료의 감면율을 30%로 적용	70%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감면
-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 대기업*과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 계약에 따라 공동 연구 개발 통해 공동으로 특허(실용신안) 출원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50%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 전담조직은 적극적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료 50% 감면

특허제도의 기원

Patent의 어원(語源)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되었으므로 특허증서를 개봉된 문서, 즉 Letters Patent라 하였으며 그 후 "Open" 이라는 뜻을 가진 Patent가 특허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음.

최초의 특허법(1474년)

르네상스 이후,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공업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 하여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

→ 갈릴레오의 양수. 관개용 기계에 대한 특허 (159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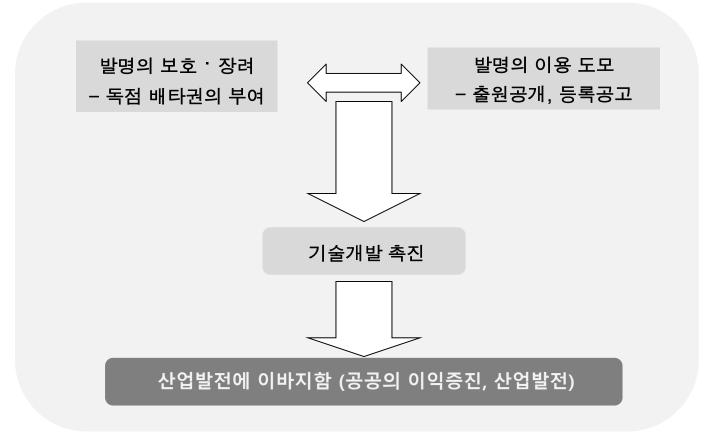
현대적 특허법의 모태

영국의 전매조례 (Statute of Monopolies : 1624~1852) : 선발명주의, 독점권(14년), 공익위배 대상 특허 불인정

→ 산업혁명의 근원이 되는 방적기, 증기기관 등이 탄생

특허법의 목적

발명을 보호 ·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특허법 제1조)



실용신안법이란

실용적인 고안(考案)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1961. 12. 31, 법률 제952호).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

특허법에서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며 실용신안에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을 말한다. 즉 실용신안법에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은 특허처 럼 고도의 것이 아니다.

발명과 고안

발명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高度한 것

고안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 그러나 고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심사실무적으로는 출원인에게 그 판단을 일임하 고 있음.

출원인이 특허출원, 실용신안출원을 판단함.

발명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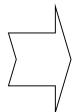
- 1. 자연법칙
- 2. 단순한 발견이어서 창작이 아닌 것
- 3.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것
- 4.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아니한 것
- 5. 기능
- 6. 단순한 정보의 제시
- 7. 미적 창조물
- 8.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자체,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 9. 반복하여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것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

등록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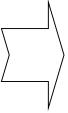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



- ✓ 의료행위는 등록 불가
- ✓ 업으로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은 등록 불가
- ✓ 현실적으로 명백하게 실시할 수 없는 발명은 등록 불가

신규성

출원전에 국내에 공지 • 공연 되지 않고 국외에서 알려지지 않은 것



- √ 출원 전에 국내외에 공지·공연된 발명은 등록 불가
- ✓ 간행물, 전기통신회선에 게재된 발명은 등록 불가

진보성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 할 수 없는 것



- ✓ 수집발명, 치환·전용발명, 용도발명, 선택발명은 등록 불가
- ✓ 치수한정발명, 재료한정발명, 화학물질 발명은 등록 불가

출원서류의 구성

출원서 표지: 서류명, 출원인, 대리인, 발명자, 제출일자,

대리인 및 발명(고안)의 명칭, 심사청구 및 취지 등

요약서: 발명을 요약정리 (기술정보로 활용)

명세서: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설명 :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종래 기술분야,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발명의 효과

특허청구범위: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도면: 필요한 경우 기술구성을 도시하여 발명을 명확히 표현

[도면 1]~

구분	특허	실용신안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고도의 것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보호대상	물건(물질, 장치), 방 법(사용, 제조방법)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에 관한 고안			
등록요건	산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mark>출원일로부터 10년</mark> (구법적용은 15년)			
출원공개	0	무			
목적	발명의 보호. 장려 및 그 이용도모 → 기술발전촉진 → 산 업발전 이바지	실용적 고안의 보호 . 장려 및 그 이용도 모 → 기술발전촉진 → 산업발전 이바지			
권리분쟁	특허심판원(1심) → 특허법원(2심) → 대법원(3심)				



상 표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하며(제2조제1항제1호),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 (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제2조제1항제2호).

자타상품의 식별기능

출처표시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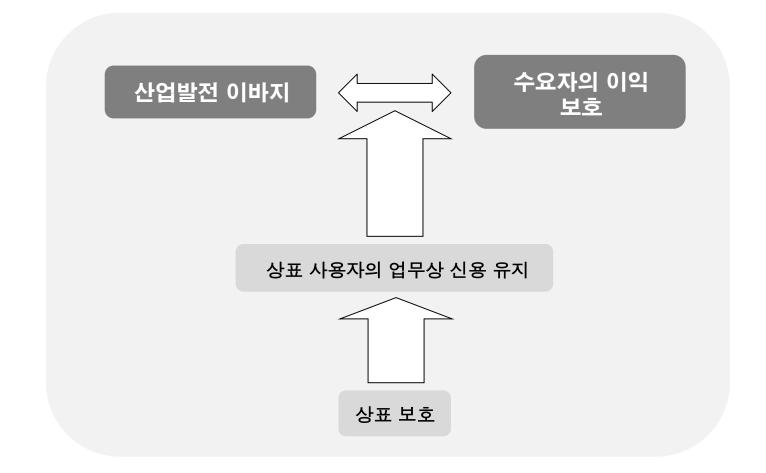
품질보증 기능

광고선전기능

재산적 기능

상 표 상표법의 목적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상표법 제1조)



문자상표

K·SWISS 고향빛노을



도형상표









결합상표





입체상표









동작상표





홀로그램상표







색채만으로 된 상표





위치상표

소리상표 소리를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상표(MP3 등 범용 오디오파일 제출)

(시각적 표현) 이 소리상표는 출원인의 징글음으로서 첨부된 파일 및 악보에서와 같이 가장조로 된 5개의 악음 (樂音) E, C#, D, F#, E 에 따라 1.7초간 "띵띵 띠링띵"으로 청음된다. 처음 2음은 8분 음표로 묶여있고, 나머지 3음은 16분 음표, 8분 음표, 16분 음표로묶여있어서 밝고 경쾌한 느낌의 소리로 구성되어 있다. [상표권자: SK텔레콤(주)]

냄새상표 냄새를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상표(액채형태의 물질을 포함하는 밀폐용기, 향이 포함된 향패치 제출)

(시각적 표현) 이 냄새상표는 첨부된 샘플과 같이 갓 깎은 풀냄새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풀은 골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크리핑 벤트그래스 잔디를 말하며 갓 깎은 풀냄새란 잔디깎기 기계 또는 낫으로 깎자마자 발산되는 냄새로 깎은지 1시간이 지나지 않은 냄새를 말한다

상표는 지정상품에만!!!!



"애플-컴퓨터"



"소나타-차량"



"새우깡-과자"

부정경쟁방지법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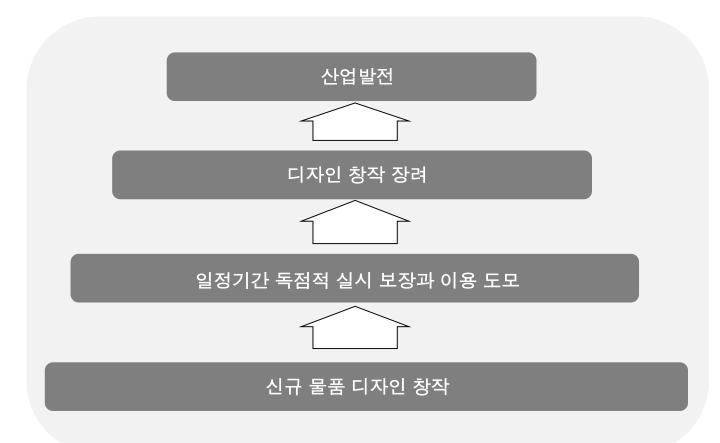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함(제 1조 목적)

구분	특허	실용신안	상표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고도의 것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타인의 상품과 식별 되도록 사용하는 기 호,문자,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보호대상	물건(물질, 장치), 방 법(사용, 제조방법)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에 관한 고안	상표사용자의 업무 상의 신용, 수요자의 이익		
등록요건	산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자타상품의 식별력 여부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출원일로부터 10년 (구법적용은 15년)	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가능, 반영구적 권리)		
출원공개	유	무	ਜ		
목적	발명의 보호. 장려 및 그 이용도모 → 기술발전촉진 → 산 업발전 이바지	실용적 고안의 보호 . 장려 및 그 이용도 모 → 기술발전촉진 → 산업발전 이바지	상표보호 → 상표사 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 도모 → 산업 발전 이바지 및 수 요자 이익보호		
권리분쟁	특허심판원(1심) → 특허법원(2심) → 대법원(3심)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디자인보호법 제1조)



디자인의 정의

디자인은 영어의 'Design'에서 비롯된 외래어로서 제품에 관한 제품디자인, 광고 포스터·그래픽디자인·디지털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디자인, 생활공간이나 환경에 관한 환경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을 포함하는 용어이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는 『<u>디자인이라 함은 물품</u>[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u>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u> <u>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u>』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인 물품(또는 동물품의 부분)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물품과의 불가분성!!

디자인특허 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

디자인 등록요건

공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유사판단)

용이창작

선출원

디자인 부등록요건

국기, 국장, 훈장 등과 유사하거나 이를 구성요소로 한 것

공서양속 위반

타인의 상표와 오인혼동

물품의 기능확보를 위한 불가결 형상만으로 된 것

디자인 등록요건 - 신규성(유사판단)

법제33조(디자인등록 요건)

- ①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 1.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 2.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 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 3. 제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취지)이미 공지되어 새롭지 않은 디자인에 대해 특정인에게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 목적에 반하기 대문이다.

(원칙)출원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디자인!!

디자인 등록요건 - 창작성

법제33조(디자인등록 요건)

②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없다.

- 1.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 2.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체 또는 이들의 결합

(취지)비록 출원디자인이 공지 등이 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않더라도 그 형태적 차이가 당 업계에서 인정할 수 있는 창작적 가치를 가진 경우에 한해 보호의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원칙)공지 등이 된 디자인 또는 주지형태를 거의 그대로 모방하거나 그 가하여진 변화가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 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창작수 준이 낮은 경우이다.

구분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고도의 것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타인의 상품과 식별 되도록 사용하는 기 호,문자,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미감을 갖 는것	
보호대상	물건(물질, 장치), 방 법(사용, 제조방법)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에 관한 고안	상표사용자의 업무 상의 신용, 수요자의 이익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통한 심미감	
등록요건	산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자타상품의 식별력 여부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출원일로부터 10년 (구법적용은 15년)	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가능, 반영구적 권리)	출원일로부터 20년	
출원공개	O Ti	무	û H	출원인이 공개신청 가능	
목적	발명의 보호. 장려 및 그 이용도모 → 기술발전촉진 → 산 업발전 이바지	실용적 고안의 보호 . 장려 및 그 이용도 모 → 기술발전촉진 → 산업발전 이바지	상표보호 → 상표사 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 도모 → 산업 발전 이바지 및 수 요자 이익보호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도모 → 디자인 창작 장려 → (물품 수요증대) → 산업발 전 이바지	
권리분쟁	특허심판원(1심) → 특허법원(2심) → 대법원(3심)				

저작권

저작권

창작과 동시에 권리 발생 출원과 심사 절차 필요 없음 사후 70년 인정

이 점에서는 저작권이 창작자에게는 산업재산권보다 더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권법 제 2조)

저작물의 예시 등(저작권법 제4조)

- 1. 어문저작물(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작사 등)
- 2. 음악저작물(가요, 성악, 뮤지컬, 작곡, 편곡 등)
- 3. 연극저작물(연극, 무언극, 무용극, 창극 등)
- 4. 미술저작물(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밖의 미술저작물)
- 5. 건축저작물(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
- 6. 사진저작물(초상, 광고, 기록, 예술 등)
- 7. 영상저작물(영화, 방송프로그램, 뮤직비디오, 게임, 광고, 애니메이션 등)
- 8. 도형저작물(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등)
-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운영체계, 응용프로그램, 게임운영프로그램 등)

2차 저작물(번역, 편곡, 번안, 각색, 시나리오, 영상제작물 등)

편집저작물(백과사전, 전화번호부, 팜플렛, 브로슈어,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등)

구분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고도의 것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타인의 상품과 식별 되도록 사용하는 기 호,문자,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미감을 갖 는것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 저작물에 대한 독점 배타적 권리
보호대상	물건(물질, 장치), 방 법(사용, 제조방법)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에 관한 고안	상표사용자의 업무 상의 신용, 수요자의 이익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통한 심미감	소설·시·논문·강연·연 술·각본·음악·연극·무 용·회화·서예·도안·조 각·공예·건축물·사진· 영상·도형·컴퓨터프 로그램 등 저작물
등록요건	산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자타상품의 식별력 여부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창작성 (등록 불필요한 무 방식주의)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출원일로부터 10년 (구법적용은 15년)	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가능, 반영구적 권리)	출원일로부터 20년	저작자 사후 70년
출원공개	ਜ	무	О	출원인이 공개신청 가능	공표. 발행해야 함
목적	발명의 보호. 장려 및 그 이용도모 → 기술발전촉진 → 산 업발전 이바지	실용적 고안의 보호 . 장려 및 그 이용도 모 → 기술발전촉진 → 산업발전 이바지	상표보호 → 상표사 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 도모 → 산업 발전 이바지 및 수 요자 이익보호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도모 → 디자인 창작 장려 → (물품 수요증대) → 산업발 전 이바지	저작물 보호. 장려 → 문화발전 이바지
권리분쟁	권리분쟁 특허심판원(1심) → 특허법원(2심) → 대법원(3심)				일반법원과 동일

감사합니다



042-601-4351

designad@korea.kr